

● 제311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24 )

2022. 7. 25.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24

### I. 동의안 개요

#### 1. 제출자 및 제안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출일 : 2022년 7월 13일
- 다. 회부일 : 2022년 7월 14일

#### 2. 제안이유

- 가.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전문적이고, 내실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울시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나. 서울시에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지원 개선대책 추진을 위해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및 위기대응시스템 관리를 전담하는 센터를 설립·운영하고, 금융위기 청년의 신속한 경제적 복귀를 지원하고자 금융취약 청년 맞춤형 재무상담, 채무조정, 금융교육 등 청년특화 전문상담체계를 구축·강화하고자 함.
- 다. 이에 따라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사업 및 금융취약 청년 재기성공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2022년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하고자 하며,

라. 서울시복지재단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 가. 출연 개요

-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 규모 : 건물면적 967.12m<sup>2</sup>, 건물연면적 10,830.25m<sup>2</sup>
- 관련법령
  - 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조례 :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나. 주요사업

- 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 복지 분야의 평가·심사 및 인증
- 복지 분야의 교육 및 자문
- 복지 분야의 프로그램 개발·보급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 지역복지 활성화 지원
-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금융복지서비스 지원 등

#### 다. 추경개요

- 추경 예산 : 1,278,300천원

※ 22년 총 출연금액 : 51,958,346천원 (기정 출연금액 : 50,680,046천원 포함)

- 추경 필요성

- 최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립·고독사 등 사회문제가 이슈화 되고 있어 서울시에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지원 개선대책 추진을 위해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및 위기대응 시스템 관리를 전담하는 센터를 설립·운영하여 고립가구 지원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고자 함.
- 코로나19 및 최근의 급격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청년층 부채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금융위기 청년의 신속한 경제적 복귀를 지원하고자 금융취약 청년 맞춤형 재무상담, 채무조정, 금융교육 등 청년특화 전문상담체계를 구축·강화하고자 함.

- 추경 예산 산출 근거

- 추경 요청액 : 1,278,300천원

<b>▶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센터 사업</b>	<b>618,300천원</b>
· 고립가구 스마트플러그 관리대상자 모니터링 용역	450,000천원
· 인건비(10명)	117,300천원
· 사회적 고립가구 관리 매뉴얼 제작비	23,000천원
· 우리동네돌봄단 등 역량강화 교육과정 개발비	13,000천원
· 「사회적고립가구 지원센터」 설치관련 경비	15,000천원
<b>▶ 금융취약 청년 재기성공 지원 사업</b>	<b>660,000천원</b>
· 「광역 청년특화센터」 보증금 및 이전비	550,000천원
· 청년재기성공 재무코칭 교육개발 등 운영예산	20,000천원
· 상담시스템 구축 사전컨설팅 등	20,000천원
· 인건비(6명)	70,000천원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 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한광모)

### 1 동의안 제출 개요

-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에서 시의성있는 시책사업을 추진하고자 출연금의 추가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sup>1)</sup>에 따른 예산편성 사전절차로서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 2 서울시복지재단 일반현황

#### 가. 서울시복지재단 현황 및 개요

- 복지재단은 서울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함으로써 서울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3년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설립되었음.

#### 1. 조직 및 인력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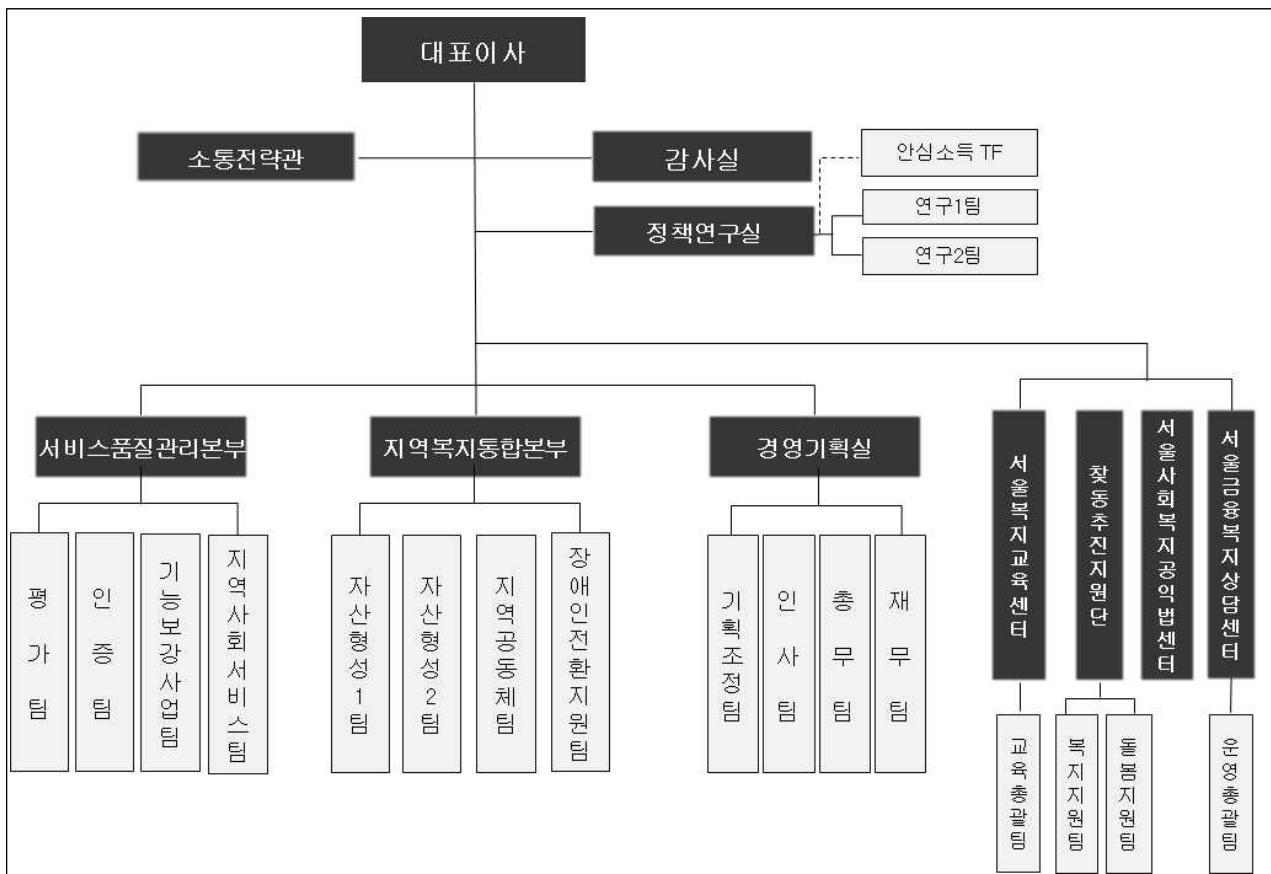
- ‘22년 7월 기준 복지재단은 1전략관·2실, 2본부·1실, 3센터·1지원단으로 구성되어 있음.

---

1)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표〉 서울시복지재단 조직도

('22. 7월.기준)



- 현재 인력 정원은 187명, 현원 186명이며, 상세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 〈표〉 서울시복지재단 정·현원표

('22. 7. 1. 기준, 단위: 명)

구분	계	대표 이사	소계	일반직 · 특정직								임피제 별도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미화직	
정원	187	1	186	2	10	22	28	29	56	37	2	-
현원	186	1	185	2	9	21	28	28	48	43	2	4

※ 기간제근로자 28명 별도

## 2. 추가 출연의 적정성

- 복지재단은 기정예산에서 12억 7천8백만원 규모의 예산을 증액하고자 하고 있음. 추경 사유는 시의성 있는 시책사업 추진의 재원확보를 위한 예산 증액으로, 추경사업을 통해 「사회적고립가구 지원센터」와 「광역 청년특화센터」를 신설해 운영하겠다는 것임.

〈표〉 서울시복지재단 출연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51,958,346	(x-) 50,680,046	(x-) 1,278,300
출연금	(x-) 51,958,346	(x-) 50,680,046	(x-) 1,278,300

- 사회적고립가구 지원센터 설립운영 사업에는 모니터링 용역비, 인건비, 매뉴얼 제작비 등이 포함된 6억 1천8백만원, 금융취약청년 재기성 공 지원사업 추진에는 청년특화센터 보증금 및 이전비, 인건비, 재무 코칭 교육 개발 등이 포함된 6억 6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 (1) 사회적고립가구 지원센터

- 사회적고립가구 지원센터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개선대책 추진 지원을 위해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및 위기대응체계를 총괄하는 전담지원센터를 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자 추진하는 것임.

※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센터 추진개요

- 센터명 :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센터
- 추진인력 : 1센터 2팀 총인원 10명 (센터장 1명, 팀장 2명, 팀원 7명)
- 추진내용
  - ① 지원 거부가구 중점대응 : 사각지대 발굴(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도출
  - ② 위기대응시스템 총괄관리 : IoT 기기·우리동네돌봄단 등을 활용한 현장대응체계 지원
  - ③ 고립가구 지원체계 역량강화 및 정책개발 : 맞춤형 교육과 관련 정책 개발

- 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센터는 복지 사각지대 가운데에서도 특히 자신의 의지로 복지서비스를 거부하는 가구를 중심으로 발굴·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음.
- 그러나, 복지재단에서 제시하고 있는 센터의 주요사업 가운데 고립위험 실태조사 및 스마트기기 보급 및 관리현황 파악 등의 업무는 현재 동주민센터 및 자치구 직원들이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 맞춤형 현장대응 실무자 교육과정 개발 및 지역별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실천전략 도출 등의 업무는 기존 재단의 서울복지교육센터, 정책연구실, 지역복지 팀에서도 유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따라서 복지재단에서 센터를 신설하는 것보다 기존 유사업무 수행 인력과 조직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2) 금융취약청년 재기성공 지원사업 추진

- 금융취약청년 재기성공 지원사업은 기존에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역할을 강화하여 만 39세 이하의 금융취약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에 특화된 맞춤형 금융복지상담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

### ※ 서울금융복지상담 「(광역) 청년특화 센터」 설치·운영 추진개요

- 명 칭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광역 청년특화 센터」
- 위 치: 강남권
- 추진인력 : 총 인원 10명 (팀장 1명, 상담관 8명, 행정 1명)
- 사업대상 : 만 39세 이하 서울시 금융취약 청년 (일반시민 상담도 병행)

사업대상	금융취약 청년 (저소득자, 채무보유자 등)	자산이 부족한 청년 (대학생, 취준생, 사회초년생 등)	자산이 넉넉한 청년
수행 영역	서울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청년특 화센터)	미래청년기획단 (서울 영테크)	민간 영역 (금융회사, 유튜브 등)

- 현재 복지재단의 계획에 따르면 청년 접근성 등을 고려해 기존 강남, 송파센터를 통합하여 강남권에 청년특화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지원 내용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1:1 개인맞춤형 재무상담, 금융 교육, 부채상담 서비스를 오프라인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임.
- 이미 복지재단에서는 신규사업과 유사한 청년재무길잡이 사업<sup>2)</sup>을 시행 중에 있는데, 해당 사업의 경우 1차 전화 상담을 통해 기초상담을 진행하고, 2차 내방상담을 통해 1:1 재무컨설팅을 제공한 견에 한해 수료증을 발급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전화상담이 실제 재무상담으

2) 청년재무길잡이사업의 대상은 만29세 이하의 개인회생을 신청한 청년으로 재단에서는 추경을 통해 해당 사업의 대상을 만39세 이하의 금융취약청년으로 확대시키고 이들을 대상으로 전반적 금융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목적임.

로 이어진 경우는 절반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표〉 청년재무길잡이 사업 22년도 실적

(단위 : 명)

구 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상담건수	1,780	274	246	329	325	299	307
수료인원	871	138	110	163	171	141	148

- 청년층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는 경우가 많음. 이미 복지재단에서 진행 중인 청년재무길잡이 사업도 상담이 실제로 수료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부분도 사업의 확장에 있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 하겠음.

### 3 종합의견

- 본 출연동의안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에 따른 복지재단의 출연여부에 대해 결정하는 것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 시 복지재단에서 편성한 추경사업안의 목적·시기 등을 포함한 예산편성의 적합성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금번에 복지재단에서 편성한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등 제반 경비가 주된 내용임. 신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존 복지재단의 조직, 인력 등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음.

문 의 처

도미화 입법조사관 (02-2180-8147)